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7
------------------	-----

발의년월일 : 1993. 3. 6.

발의자 : 조례점비특별위원장

□ 제안이유

-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함.
- 불필요 조항 삭제
- 영농정책의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지원금 증액
- 농업계 고등학교 화훼기술육성의 폭을 경제작물로 확대시행

□ 주요골자

- 징수관을 명시(내무국장으로)
- 지원금 증액(100만원 → 300만원)
- 농업계고등학교 화훼기술육성에 국한된 것을 경제작물육성으로 확대

□ 근거법령 :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제3조 제2항

□ 첨 부

1.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련법규 발췌 1부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제2조의”를 “제3조의”로 하고, 이경우 뒤에 “징수관은 내무국장으로”를 삽입한다.

제9조 ①~⑤항은 삭제한다.

제9조의2증 “제9조의2”을 “제9조”로 하고 제9조의 ③항증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9조의3 (“화훼기술”육성을 위한 농공특별지원 응자특례)를 “제9조의 2”(“경제작물”기술육성을 위한 농공특별지원응자특례)로 하고

제9조의3제1항증 “화훼기술”을 “경제작물”로 “선정한”을 “선정된”으로 하며 “화훼기술배양”을 “경제작물기술육성”으로 한다.

제9조의3제2항증 “화훼기술”을 “경제작물기술”로 한다.

제9조의3제5항증 “이 조례와 화훼기술육성특별지원금운용규정(내무부 훈령)에 의한다.”을 “이 조례와 별도의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특별회계의설치)</p> <p>①(생략)</p> <p>②특별회계의 운영을 위한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충 청북도재무 회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분임장 수관은 <u>국민운동지원과장</u>으로, 수입금출납원은 새마을계장으로 한다.</p> <p>제9조(지방이주도시영세민특별지 원자금융자특례)</p> <p>①지방이주 도시 영세민으로서 정착의지와 자립의욕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특별지원기금을 용 자할 수 있다.</p> <p>②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 원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자 금은 농촌소득증대사업자금으로 융자한다.</p>	<p>제7조(특별회계의설치)</p> <p>①(현행과 같음)</p> <p>②</p> <p>제3조의 이 경우 징수관은 내무국장 으로,</p> <p>제9조(삭제)</p>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④제3항의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100만원으로 한다.</p> <p>⑤이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 융자에 따른 융자기간, 융자조건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9조의2(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 ①농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농촌정착의지와 자립영농 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에 대하여 도교육청 교육감의 추천에 의거 지원대상 학생의 보호자 명의로 특별지원금을 융자할 수 있다.</p> <p>②우수농고생에 대한 영농정착 특별지원금과 상환금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p>	
	<p>제9조(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 지원금 융자특례)</p> <p>①~②(현행과 동일)</p>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용자한도액은 학생당 100만원으로 한다.	③ 300만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거치 1년상환 무이자로 한다.	④⑤(현행과 동일)
⑤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금운용규정(내무부장관훈령 제752호)”에 의한다.	
제9조의3(<u>화훼기술육성을 위한 농공특별지원 융자특례</u>) ① <u>화훼기술육성</u> 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u>교육감이 추천한 농업계 고등학교중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u> 에서 선정한 학교에 <u>화훼기술배양</u> 을 위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9조의2(<u>경제작물기술육성을 위한 농공특별지원 융자특례</u>) ① <u>경제작물</u> 선정된 <u>경제작물 기술육성</u>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②화훼기술육성을 위한 농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과 상환금은 새마을소득 특별지 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 다.</p>	<p>②경제작물</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학교당 1,000만원 으로 한다.</p>	<p>③~④ 현행과 동일</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 간은 1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 로 한다.</p>	
<p>⑤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업이 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와 화훼기술육성 특별지원금 운 용규정(내무부훈령)에 의한다.</p>	<p>⑤</p> <p>이 조례</p> <p>와 별도의 지침을 적용할 수 있 다.</p>